-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456호

2020. 05. 13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0. 04. 29. 정순희 의원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20. 05. 01. 행정재경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
2020. 05. 13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정순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향후 양천구의 보조금이 지원될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고,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
○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함(안 제3조).

○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, 그리고 설치와 관리, 철거에 관한 규정을 둠(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)

○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 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함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양천구가 보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보조금지원 시설 및 단체임을 인지하여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○ 제출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정한 바,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교부한 자금을 "보조금"으로 정하고, "보조금지원 표지판"은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하는 표지판으로 정함.

-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로 구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, 표지판을 설치 해야하는 보조사업 기준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참고로 구 지방보조금의 대상은 소규모 행사부터 대규모 공사비까지 보조금 지원범위가 매우 폭넓으나 행사보조금의 경우 본 조례안에 적용범위에서 제외됨.

- 안 제4조에서는 표지판 설치조건을 정하고 있는 바,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7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금액에 대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,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표지판을 설치·관리하도록 교부조건을 정한 것은 별 문제가 없음.

- 안 제5조에서는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표지판, 시설표지판,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하고 표지판에는 보조금 지원기관임을 밝히고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정함.
-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라 게시하는 건설공사장에 대통령령에 따라 게시하는 건설공사 현장 표지판에 보조금 지원 공사임을 표기하도록 정함.
- 안 제7조에서는 시설표지판 설치에 대해 정한 바,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지원 시설임을 표기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, 제2항에서는 시설표지판 대신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. 제3항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10년이 경과된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.
-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관리·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정함.
- 안 제9조에서는 표지판 설치 시점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할 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한 바, 안 부칙 제2조에서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조례가 공포된 후 보조금 지원 사업부터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나, 안 제7조제3항에서는 10년 전 지원시설에서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둠.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설표지판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설치하도록 정한 바, 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,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시설 등을 교부 목적 외 사용하거나 양도, 교환 또는 대여,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이며, 표지판 설치장소로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정하여 보조금표지판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봄.

- 안 제10조에서는 기 설치된 표지판의 관리 주체를 보조사업자로 정하고 보조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표지판을 이동해야 할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여 함부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미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비용을 회수하도록 정한 바,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8에 따른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음.
- 안 제11조에서는 표지판 설치 기간이 경과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,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, 보조사업 폐지 승인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표지판을 철거하도록 정함.
- 안 제12조에서는 표지판 설치·관리 및 철거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하되, 필요한 경우 교부되는 보조금에서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함.

○ 본 제정조례안은 구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 및 운영하는 공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이 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. 다만, 지방보조금 지원범위가 몇 백만원부터 몇 억원으로 그 범위의 차이가 많아 보조금 지원금액에 비해 표지판 설치금액 부담이 많은 경우 보조금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져 표지판 설치 기준 보조금의 범위를 정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.

○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성북구, 동대문구, 강서구, 도봉구, 용산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